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26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회 의원, 김선호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상위법률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동안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부재하였음

❍ 이에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당진시의회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행동강령의 적극적인 준수와 실천을 통한 당진시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규정을 둠(안 제4조 ~ 제8조)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 특혜의 배제
- 제6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8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다. 부당이득 수수,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 ~ 제16조)

- 제9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0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1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3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4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15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6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둠(안 제17조 및 제18조)

- 제17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8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마.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19조 ~ 제23조)

- 제19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 제21조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2조 : 징계 등
- 제23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바. 보칙 규정을 둠(안 제24조 ~ 제26조)

- 제24조 : 교육
-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26조 : 운영규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2025.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당진시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

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무원이 민원 등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제17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따라 수수하는 사례금
2. 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5.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7.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9.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의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2조(징계 등)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의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조례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역할을 겸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조례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7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r>
<tr><td rowspan="2">신고자</td><td colspan="2">성명</td><td>소속</td></tr>
<tr><td colspan="2">직위
(직급)</td><td>연락처</td></tr>
<tr><td rowspan="2">요청인</td><td colspan="2">기관명</td><td>대표자</td></tr>
<tr><td colspan="2">담당부서

(담당자)</td><td>연락처</td></tr>
<tr><td>외부강의등 주제</td><td colspan="3"></td></tr>
<tr><td>장 소</td><td colspan="3"></td></tr>
<tr><td>일 시</td><td colspan="3">20 . . . ~ 20 . . .
시 분 ~ 시 분</td></tr>
<tr><td>사례금</td><td colspan="3">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td></tr>
<tr><td>초과사례금</td><td colspan="3">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td></tr>
<tr><td>초과사례금
반환</td><td colspan="3">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td></tr>
</table>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8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r>
<tr><td rowspan="2">청구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소속</td><td>직위
(직급)</td></tr>
<tr><td>청구금액</td><td colspan="2"></td></tr>
<tr><td>반환계좌</td><td colspan="2">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td></tr>
<tr><td rowspan="5">반환금품
및
처리내역</td><td colspan="2">금품
(물품)</td></tr>
<tr><td colspan="2">수량
(금액)</td></tr>
<tr><td colspan="2">받은일시</td></tr>
<tr><td colspan="2">반환일시</td></tr>
<tr><td>증빙서류 목
록</td><td>※증빙서류(사본) 첨부</td></tr>
<tr><td rowspan="3">반환받는
사람</td><td>성명</td><td>주소</td></tr>
<tr><td>연락처</td><td>청구인과의 관계</td></tr>
<tr><td colspan="2">직무관련 내
용</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2"></td></tr>
</table>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당진시의회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당진시의회 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1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r>
<tr><td rowspan="3">신 고 자</td><td colspan="2">성명</td><td>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소속</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 rowspan="5">금품등을
제공한 자</td><td colspan="3">성명</td></tr>
<tr><td colspan="2">직업
(소속)</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3">주소</td></tr>
<tr><td rowspan="2">법인·단체등
의 경우</td><td colspan="2">명칭</td></tr>
<tr><td colspan="2">소재지
대표자 성명</td></tr>
<tr><td>신고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금품등
수수 내용</td><td colspan="3">일시</td></tr>
<tr><td colspan="3">장소</td></tr>
<tr><td colspan="3">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td></tr>
<tr><td rowspan="2">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td><td colspan="3">반환여부</td></tr>
<tr><td colspan="3">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td></tr>
<tr><td>증거자료</td><td colspan="3"></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3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제14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직급)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27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회 의원, 김선호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 징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 방법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2025.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의회 규칙 제 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

(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28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회 의원, 김선호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육훈련,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바 있음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인사권 독립 이전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았으나,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규율할 조례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근무경력 5년 이상 / 55세 이하 / 대학·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라.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종료 후 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당진시장과 위탁교육훈련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2025.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이하 “위탁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 절차
4. 훈련경비 지원 및 반납
5. 교육 이수 이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범위는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기간은 대학·대학원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경우

2.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반납액은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보고) ①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은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교육

훈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29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 김명회 의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전영옥 의원, 김선호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한상화 의원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당진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 ‘자치환경국’을 ‘자치안전국’으로 변경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 ‘농업환경국’ 신설
- ‘환경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 ‘시설관리사업소’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입법예고(2025. 7. . ~ 7.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농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삭 제	라. 자치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자치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바. 삭 제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농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30호

발의연월일 :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 김덕주 의원, 김봉균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제4조)
❍ 공공자금 운용 원칙 (안 제5조)
❍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안 제6조)
❍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안 제7조)
❍ 교육(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당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 및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마. (생 략)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 카. (생 략)

2. ~ 7. (생략)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2조(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 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예산배정계획 등)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기구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재정투자사업 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업무담당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생략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66			
정 책 명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성혜정	전화번호	041-350-34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회계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 조 례 명: 당진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발의의원: **김덕주 의원**
- ❍ 제안이유: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 수입의 극대화 도모
- ❍ 소관부서: **회계과**

Ⅱ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제4조)
- ❍ 공공자금 운용 원칙 (안 제5조)
- ❍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안 제6조)
- ❍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안 제7조)
- ❍ 교육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 **소관부서(회계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는 등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이자수입 확대 등 시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하므로 조례 제정 타당함
 - 다만, 법령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필요
- ❍ **관련부서(기획예산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강화에 기여하므로 조례제정 타당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법령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 “하여야 한다” 로 수정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 “하여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야 한다” 로 수정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31호

발의연월일 :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 조상연 의원, 김봉균 의원, 윤명수 의원, 김덕주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안 제3조)

❍ 조치의무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최초로 개회되는 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69			
정 책 명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명	박은영	전화번호	041-350-36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기획예산담당관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조상연 의원**

❍ 제안이유: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

❍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조치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기획예산담당관)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 사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타당함
- 다만, 일부 조문에 구어체 사용으로 문어체로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 및 분기별 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법령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	-오타 수정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최초로 개회되는 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음 열리는” 구어체 표현으로 문어체로 수정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받는 것으로 문구 수정하여 의미 명확화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32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김덕주 의원, 김봉균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지역소멸 위기 심화와 함께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 상권의 쇠퇴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상생발전 등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7.)된 바 있음

❍ 당진시도 지역 소멸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고, 쇠퇴하는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나. 지역상생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증가 비율을 100분의 5로 함(안 제3조)

다.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모니터링 및 평가, 협약의 체결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안 제5조 및 별지 서식)

마.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조사・연구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을 재산세 및 사용료・대부료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생애 최초 창업인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근거를 둠(안 제10조)

차.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인증서 및 현판, 상하수도·주차장 감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2]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2025.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2.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이란 당진시 재산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함)을 말한다.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권장)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
3.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로 함)
4.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이내 감경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남/여)
	주소	전화(팩스)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인 가	→	통 보

210 ㎜ × 297 ㎜(백상지 80 g/㎡)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김덕주 의원**

❍ 제안이유

- 지역소멸 위기 심화와 함께 신도시 조성, 주요 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 상권의 쇠퇴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 발생
- 쇠퇴하는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지역상생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증가 비율을 100분의 5로 함 (안 제3조)

❍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모니터링 및 평가, 협약의 체결 등을 규정함 안(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

❍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을 재산세 및 사용료·대부료로 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생애 최초 창업인을 규정함 (안 제8조)

❍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근거를 둠 (안 제10조)

❍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인증서 및 현판, 상하수도·주차장 감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지역경제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착한 임대인 지정 등으로 영세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상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다만, 용어의 통일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조례 문구의 명확한 전달을 위한 오타 등 일부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문구 추가 -용어 통일을 위해 “지역V상권” → “지역상권”으로 띄어쓰기 수정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	-생애최초 창업인의 기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한 지원) 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을 말한다.	한 지원) 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을 말한다.	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위법 및 조례 내 정의 없음 -소관부서 의견은 어떤지
제10조(상생협약 권장) 4. 그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제10조(상생협약 권장) 4.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띄어쓰기 수정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오타 수정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2]**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67)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의 조사·연구비용 등 사업지원
- 안 제8조 : 자율상권 활성화구역 내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지원(감면)
- 안 제11조 :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지원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함.

4. 작성자 : 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67			
정 책 명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윤철원	전화번호	041-350-40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지역경제과장 귀하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33호

발의연월일: 2025년 7월 17일

발 의 자: 김봉균 의원, 김덕주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개정이유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발생 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내용상 이를 별도로 두기 보다는 유사 조례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조례의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의 규정을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12조의2)

나.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둠(안 제12조의3)

다. 조례의 용어, 상위법률 제명, 띄어쓰기, 약칭 규정 등을 정비함

라.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7. . ~ 2025. 7.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사용자이다”를 “사용자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관계법”을 “노동관계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운영 할”을 “설치·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근로복지기본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을 “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

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
6.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당진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당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 사용자로 한다.
제9조의3 (노동조사관) ①·② (생 략)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3. (생 략)	제9조의3 (노동조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노동관계법령 ----------.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생 략)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설치·운영할 ------.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근로복지기본법」 등 ----------.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 ----------
<신 설>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	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
6.「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	6.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노동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3.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1. 시의회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봉균 의원**
❍ 제안이유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발생 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의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소관부서: **기업육성과**

Ⅱ 주요내용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 (안 제12조의2)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둠 (안 제12조의3)
❍ 조례의 용어, 상위법률 제명, 띄어쓰기, 약칭 규정 등을 정비함
❍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기업육성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당진시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타당함

- 다만, 문장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장 내 중복되는 단어 삭제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조례 통합에 따른 내용 정비로 행정 실무와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조문 구조 및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중복 어휘 삭제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재난 및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재난 및~~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의 앞선 언급으로 중복 어휘 삭제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2]**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64)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어 재정수반요인 발생(안 제12조의 2)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상황,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경제국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64			
정 책 명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기업육성과		
	담당자명	임헌우	전화번호	041-35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6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육성과)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요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기업육성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김봉균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용자이다”를 “사용자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관계법”을 “노동관계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운영 할”을 “설치·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근로복지기본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을 “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
6.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당진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당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 ---------- -- 사용자로 한다.
제9조의3 (노동조사관) ①·② (생 략)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3. (생 략) ④ (생 략)	제9조의3 (노동조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노동관계법령 ---------- ---------- ---.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 ----------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생 략)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 ---------- ---------- ---------- ----------.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 설치·운영할 ------. ② ----- 「근로복지기본법」 등 ---------- ----------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 ---------- ---------- ----------.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신 설>	제12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	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
6.「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	6.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노동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 ---------- ---------- --.
1. 당진시의회 의원	1. 시의회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